

치매어르신이 일상생활과 요양·의료서비스의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판단능력이 쇠퇴할 때를 대비 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치매어르신을 위해 미래의 법적설계를 지금 시작하자!



인지기능이 쇠퇴하는 고령자와 치매어르신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봄이 큰 부담입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어르신이 자살하였다는 보도,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고 90대 어르신이 치매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였다는 보도, 우울증 60대 딸이 치매 어머니와 동반 자살하였다는 보도, 요양원에서 치매어르신을 묶어 두어 화재에도 대피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치매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는 질환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2

치매어르신이 권리행사의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쇠퇴한 고령자나 치매어르신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지능력 저하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사회보험, 기초연금, 공공부조,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실질적으로 어르신의 권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100세 시대 고령 어르신의 인권과 권리 옹호와 지원을위한 가능성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어르신을 위해 미래의 법적설계를 지금 시작하자!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

3

인지기능이 쇠퇴하는 고령자나 치매어르신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는 판단능력이 쇠퇴하는 치매어르신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유형의 후견이 있습니다. 임의후견이 그것입니다. 또한, 특정후견을 잘 활용하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치매협회는 고령자·치매후견센터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인권보호와 권익신 장을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의 임의후견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후견 없이도 후견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 후견대체제도를 개발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특정후견은 후견대체제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는 인지기능이 쇠퇴하는 고령자나 치매어르신이 임의후견이나 후견대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는 치매어르신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또 그 범위만큼 임의후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도가 심한 치매어르신은 임의후견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특정후견을 신청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치매어르신이 후견 없이 남은 여생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 가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특정후견인이 단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고령자·치매후견센터가 도울 것입니다.



치매어르신을 위해 미래의 법적설계를 지금 시작하자!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



고령자·치매후견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임의후견 이용지원

어르신의 개인적 필요에 맞춘 임의후견 등록 및 지원업무, 치매협회를 임의후견 인으로 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으로 후견업무를 감독 지원

저소득, 독거 중증치매어르신을 위한 특정후견의 지원

특정후견을 신청·지원하며 치매협회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심판청구

후견대체제도의 이용지원

- 어르신의 일상생활운용,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범위의 재산만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신탁제도
- 요양 및 의료 관련 사전지시서의 작성의 지원
- 말기 상태의 연명치료에 관한 사전지시서 작성의 지원

기타

• 후견인 활동 지원사업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인 활동 매뉴얼 지급, 후견인 활동 교육,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 시행

• 후견 홍보사업

후견사업에 대한 홍보 및 후견교육을 통한 고령자 후견문화 창달



고령자·치매후견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전화 상담

고령자·치매후견센터 대표번호(02-766-0710)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상담

support0710@hanmail.net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전화 예약 (02-766-0710) 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해주십시오.

피후견인(후견받을 사람)의 치매정도, 가족관계, 재산상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등



치에어트시를 위해 미래의 법적설계를 지금 시작하자!

고령자 · 치매후견센터 대표번호 02-766-0710 이메일 support0710@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502-519726 **예금주** (사)한국치매협회

(사)한국치매협회 대표번호 02-762-0710 팩스 02-745-0706 홈페이지 www.silverwe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ilverweb0710 트위터 @silverweb0710